

의안번호	제 249 호
의 결	1993. 12. 23 .
년 월 일	(제23회광주광역시의회 제1차 본회의)

의 결 사 항
원안 가결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 안 자	보 은 군 수 (내 무 과)
제안 년월일	1993. 12. 16

【 제안사유 】

- 보은읍 삼산6리 3반에 진화APT 신축으로 주거세대가 68세대로 비대해져 반장의 임무수행이 비효율적이고 주민화합의 적정규모를 넘고있어 합리적으로 분반하고
- 보은읍교사1리가 교사1리와,4리로 분리함에따라 분리되는 교사4리의 기존반명을 개칭하고자함

【 주요토의과제 】 : 없 음

【 주요 개정골자 】

- 현 삼산6리 3반을 삼산6리 3반, 7반, 8반으로 분반함.
- 현교사1리의 5반,6반,7반을 교사4리 1반,2반,3반으로 개칭함

【 참고사항 】

현 행			조 정			
행정리 반 명	호 수	인 구	행정리 반명	호 수	인 구	비 고
보은읍 삼산6리 3반	68호	209명	보은읍 삼산6리 3반	20 호	61명	기존반
			보은읍 삼산6리 7반	24 호	74명	진화APT
			보은읍 삼산6리 8반	24 호	74명	진화APT
보은읍 교사1리5반	18호	59명	보은읍 교사4리 1반	18호	59명	기존반
보은읍 교사1리6반	31호	99명	보은읍 교사4리 2반	31호	99명	동진APT
보은읍 교사1리7반	32호	105명	보은읍 교사4리 3반	32호	105명	동진APT

보은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보은군반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반의 명칭과 관할구역) 반의명칭과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에서 별표중

보은읍 삼산6리 새마을 반명과 관할구역을, 교사1리 새마을반명과 관할구역을
" 별지" 와 같이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날로부터 시행한다

보은군 반의명칭과 구역

읍 면	리 · 동명	새마을 반명	구 역 (번지)
보 은 읍	삼 산 6 리	제 3 반	171 -30 171 -31 172 172 -4 172 -1 172 -2 172 -3
		제 7 반	171 -4 172 -23
		제 8 반	171 -4 171 -5 171 -29
보 은 읍	교 사 4 리	제 1 반	201 202 211 212 213 214 215 216 218 219 220
		제 2 반	174 -6
		제 3 반	174 -6

【 개정사유 】

개 정 사 유	비 고
○ 현 황 - 현 보은읍 삼산6리 3반은 진화APT 신축입주로 반규모가 68호에 이르고 있음 - 교사1리에서 교사4리로 분리되는 반면명이 교사 1리 5반, 6반, 7반으로 되어있음 ○ 문제점및 개정사유 - 보은읍 삼산6리 3반이 25호를 훨씬넘는 비대반으로 인해 주민화합 및 행정수행에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어 적정규모로 조정하고 - 교사1에서 교사4리로 분리되는 반명을 교사1리 5반, 6반, 7반에서 교사4리 1반, 2반, 3반으로 개칭함	

신 구조문대조표

현				조			
읍 면	리 동별	새마을 반 명	구역(번지)	읍 면	리 동별	새마을 반 명	구역(번지)
보은읍	삼산6리	제3반	188-187	보은읍	삼산6리	제3반	171-30 171-31 172 172-1 172-2 172-3 172-4
				보은읍	삼산6리	제7반	171-4 171-23
				보은읍	삼산6리	제8반	171-4 171-5 171-29
보은읍	교사1리	제5반	100 -262 -267	보은읍	교사4리	제1반	201 202 211 212 213 214 215 216 218 219 220
보은읍	교사1리	제6반	174-6	보은읍	교사4리	제2반	174-6
보은읍	교사1리	제7반	174-6	보은읍	교사4리	제3반	174-6

반 현 황

< 총 괄 >

읍 면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계	9 1 0	9 1 2	2	
보 은 읍	2 2 1	2 2 3	2	
내속리면	5 2	5 2		
외속리면	4 0	4 0		
마 로 면	1 0 9	1 0 9		
탄 부 면	9 5	9 5		
삼 승 면	9 3	9 3		
수 한 면	6 5	6 5		
회 남 면	2 8	2 8		
회 북 면	7 3	7 3		
내 북 면	6 2	6 2		
산 외 면	7 2	7 2		